

의안 번호	260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8. 21.(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2.(수)

2.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검토 내용 참고

4. 근거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5. 종합 검토 내용

☐ 개정 이유

-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1. 7. 5. 제정하였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우선”이라는 표현이 지역의 다른 사업자의 참여 배제로 지역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촉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우선’이라는 용어를 ‘촉진’으로 변경 및 삭제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다. 조문 제목 변경(안 제7조)

- (기준) 우선구매
- (변경) 지역상품 구매

□ 검토 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0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 의견으로 조례 내용 중 “우선”을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2025. 1. 20.)함에 따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를 ‘구매촉진’ 또는 ‘우선구매 촉진’ 등으로 순화하는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지표 중 하나임.)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으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약화, 영세 기업의 생존 위협, 조례 제정 취지 퇴색, 공정거래나 타 지역 차별 우려를 지나치게 의식해 지자체의 자치권과 지역민 보호 책무를 스스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존재하므로

○ 용어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하더라도 ‘우선구매 목표비율 설정’이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같은 구체적인 강제 이행 수단을 보완책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근거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 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